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71호(號) 1931(昭和 6)년 7월 31일 金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6호(號)

1928(昭和 3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0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 및
항로 간 화물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,私設鐵道及航路間貨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
1931(昭和 6)년 8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7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4조(條) 중(中) 「광궤선간(廣軌線間)」을 「광궤선간(廣軌線間: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[朝鮮
京南鐵道株式會社] 항로[航路]를 포함[包含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7조(條)의2제1항(項)제2호(號) 중(中) 「가」의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가 철도(鐵道: 자동차[自動車] 구간[區間] 및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[朝鮮京南鐵道株式會
社] 항로[航路]를 포함[包含]함)

운임계산(運賃計算) 킬로미터수[籽程] 130킬로미터[籽]까지 마다 각(各) 1일(日)

자동차(自動車) 구간(區間) 및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(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) 항로(航路)는
그 영업(營業) 킬로미터수[籽程]를 운임계산(運賃計算) 킬로미터수[籽程]로 간주하고, 소
관(所管) 철도(鐵道)의 운임계산(運賃計算) 킬로미터수[籽程]에 가산(加算)하여 계산(計算)
함.

별표(別表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범위(範圍) (2)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(朝鮮京南鐵道株式會
社)의 항(項) 접속역(接續驛) 「천안(天安)」을 「천안(天安)·군산(群山)」으로 개정하고, 동(同)
(6) 조선우선주식회사(朝鮮郵船株式會社)의 항(項) 부산(釜山) 경유(經由)의 행(行) 중(中) 「
고저(庫底)」를, 원산(元山) 경유(經由)의 행(行) 중(中) 「블라디보스토크(浦鹽斯德:
Vladivostok)」 및 「고저(庫底)」를, 청진(淸津) 경유(經由)의 행(行) 중(中) 「블라디보스토크
(浦鹽斯德: Vladivostok)」를 삭제(削除)함.